

『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최경동 의원 외 5명

2. 제안이유

-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 필요
- 먹거리 생산·유통·소비와 관련된 안전·영양·복지·일자리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합 관리하는 공공형 운영주체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설립·운영하여 시민의 건강 기본권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을 규정(안 제1조)
 -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공급
 -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
- 재단의 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5조 ~ 제7조)
- 재단의 이사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 ~ 제24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, 회계과와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19. 11. 11. ~ 11. 18.) 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「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은
 - 시민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지역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에게는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로 소득안정을 도모하는 선순환 유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로컬푸드, 공공급식 등 푸드플랜을 총괄할 재단법인 구미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,
 - 공공성과 사업 효율성 확보 측면에서 재단법인 설립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며, 지역주민의 먹거리 복지증진,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판단됨.